

심의결과 위안대로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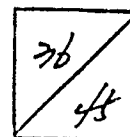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제47호	22	1986. 8. 21	총재 박 성 상

의 안 "양도·성예금 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 이율 및
부 대조 건" 일부 개정

의결사항 "양도·성예금 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 이율 및
부 대조 건"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 7조, 제 64조 및 제 65조
법규 조 항

제의취지 국내금융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, 외국은행
국내지점에 대한 우대 및 차별조치의 축소를 통한 국내외
금융기관간의 동등경쟁여건 조성 및 CD업무의 활성화를
미하기 위하여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<참 고> 관계법규조항 발췌

한 국 은 행 법 제 7 조

- ① (생략)
-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산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- ④ ~ ⑥ (생략)

한 국 은 행 법 제 64조

-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(생략)

한 국 은 행 법 제 65 조

-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(생략)

(붙임)

“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” 일부 개정(안)

현행	개정 (안)
1.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가. 만 기 : 91일이상 180일이내(중도해지불가능) 나. 증서단위금액 : 1억원 다. 발행형식 : 무기명 할인식 양도가능증서 라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 : 금융기관의 자기자본, 예수금규모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범위내 2.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대전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가. 대출한도 :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액 범위내 나. 대출용도 : 일반자금 대출에 한하되 별도의 계정(“양도성 예금증서 대출”)에 계리하여야 함 3. 취급금융기관 : <u>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장기산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금융기관</u> 4. 기 타 가.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신최고이율 및 기타조건은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시장동향 및 여수산업부취급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. 다만, 한국은행 총재는 위의 최고이율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나. 양도성 예금증서발행 채무는 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예금지급준비금 예치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. 자행발행 양도성 예금증서의 만기전 매입 및 담보취득은 금지한다. (신 설)	1. (작 동) 2. (작 동) 3. 취급금융기관 : <u>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장기 신용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</u> 4. (작 동) 5. <u>실시일자</u> : 1986. 9. 1